

지부 운영 규칙 개정 내역

2004년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제17조[대의원대회 기능]	제17조[대의원대회 기능] 8.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교섭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제35조[임원의 탄핵]	제35조[임원의 탄핵] 2. 탄핵소추는 대의원 3분의 1,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참석(투표) 조합원(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된다.	개정
제59조[징 계]	제59조[징 계] 조합원이 각종 의결사항 및 규약, 규정, 규칙 등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 집행위원회에 보고하고 조합 규약 제75조에 의거 처리한다. 징계 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며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60조[공 고]	제60조[공 고] 제58조에 의거 징계가 의결된 경우 징계결과를 다음날로부터 7일간 공고한다.	개정
신분보장시행 운영 세칙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11. 법적투쟁 비용이라 함은 벌금, 공탁금, 변호사, 노무사 비용을 말하며 변호사 선임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단, 변호사 선임료는 조합에서 통상적으로 지불하는 선임료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제5조[신분보장기금 적용]	제5조[신분보장기금 적용] 조합, 지부 신분보장기금 지급대상자는 지부신분보장 지급운영세칙에 준하여 지급하고 조합신분보장 기금은 지부신분보장기금으로 환입한다.	개정
제6조[신분보장기금 반환]	제6조[신분보장기금 반환] 사망과 부상을 제외한 해고, 정직 등의 불이익을 당하여 신분보장기금을 지급 받은 자가 회사로부터 200%보상을 받은 경우 기 지급된 신분보장 기금은 단체협약에 의거(제29조) 신분보장기금 50%를 보상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합비로 납부해야 한다. (단,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신분보장기금보다 적을 시 신분보장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07년 1월22일 4기 2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제36조[부서 설치]	제36조[부서 설치] 4. 노동안전보건부	개정
제42조[쟁의행위]	제42조[쟁의행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해당단위에서 쟁의결의 및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회, 지부, 본조에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신설
신분보장시행 운영 세칙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13. 신분보장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조합원이 이후, 퇴직금 정산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만큼 보상을 한다. (단, 지급 기준은 제4조 11항에 의거한다.)	신설

2007년 12월 6일 5기 1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제4조[활 동]	제4조[활 동] 2. 조합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또는 지부총회, 대의원 대회의 의결 사항 집행	개정
제5조[구 성]	제5조[구 성] 2. 조합원의 자격은 사무직 중 과장 미만, 기능직 중 직장 미만, 별정직은 단협에 의거 저촉되지 아니한 사원으로 하며, 비정규직, 사내하청, 사내하도급업체 종사자에 한해서도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의 취득은 아래 3, 4항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제36조[부서 설치]	제36조[부서 설치] 10. 복지후생부 11. 법규부	항 신설
제37조[부서의 업무]	제37조[부서의 업무] 3. 조사통계부: 조합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 수집 및 통계사무를 담당하며 각지회의 조사통계부의 업무관장.	3.4 문구수정 10, 11 항 신설

	4. 노동안전보건부: 조합원의 재해에 대한 예방과 처리 및 안전위생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각지회의 노동안전보건부의 업무관장. 10. 복지후생부: 조합원의 복지후생, 권익옹호를 담당하며, 각지회의 복지후생부 및 여성위원회의 업무관장. 11. 법규부: 조합활동에 필요한 노동법규와 법률에 대한 유권해석 및 각지회의 법규부의 업무관장.	
제38조[단체교섭]	제38조[단체교섭] 지부의 단체교섭은 조합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지부단위 교섭의 교섭권을 갖는다.	전국대의원대회→조합대의원대회(문구수정) 지부장→(문구삭제)

2010년 대의원대회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제11조[의결사항]	제11조[의결사항] 1. 감사위원을 제외한 임원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개정
제21조[구 성]	제21조[구 성] 집행위원회는 감사위원을 제외한 임원, 각종위원회 위원장, 지부부서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제25조[기 능] 감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부감사는 각 지회 감사위원 1명씩 참석하여 3개월마다 감사를 하며, 감사결과를 지부장에게 통보한 후 그 감사결과를 조합원(대의원)에게 보고한다. 2.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조합의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3. 지회감사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지회감사위원이 감사를 하고, 지부감사위원은 6개월마다 지회감사를 하고 지부장에게 보고한 후 그 감사결과를 7일 이내에 조합원에게 보고한다. 4. 조합 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 또는 지부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의 수임사항 감사 5. 재정 및 예산집행감사	신설

	6. 지회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위임된 지회 감사	
	제30조[임원] 4. 감사위원	항 신설
	제31조[임무] 4. 감사위원 : 감사위원의 기능을 수행한다.	항 신설
제43조[조합회계]	제43조[조합회계] 1. 조합비 회계는 일반회계1(운영비), 일반회계2(인건비)와 특별회계로 구분 관리한다. 2. 일반회계1,2는 조합비로 구성하며, 특별회계는 기부금, 기금 또는 특별 부과금으로 구성한다. 3. 일반회계2(인건비)는 무급전임자 임금지급 외 사용 할 수 없다.	1,2 개정 3 항 신설
제44조[조합비]	제44조[조합비] 2.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 중 1.5%는 필요에 따라 총회(대의원대회)의 결정에 의해 증감할 수 있다. 3. 지회 조합비는 지부에서 일괄 공제하여 지부 의무금, 금속노조 의무금, 인건비(전임자임금)를 제외한 지회 운영자금으로 영달한다.	개정
회계 운영 세칙		
제7조[회계구분]	제7조[회계구분] 1. 회계는 일반회계1,2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17조[결산보고]	제17조[결산보고] 지부장(지회장)은 회계연도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작성,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대의원대회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감사의 의무] 제28조[감사종류] 제29조[감사실시] 제30조[감사보고서 작성] 제31조[감사보고]	제7장 감사 제27조[감사의 의무] 감사위원은 조합규약 제36조, 37조 및 지부회계규정, 지부운영규칙 제23조, 제24조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감사종류] 감사위원은 다음 각 항을 감사한다. 1. 일반회계1,2 및 특별회계의 집행사항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재산 취득 및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제29조[감사실시] 감사는 감사위원 재적과반수 이상으로 집행한다.	

	제30조[감사보고서 작성] 감사위원은 다음과 같이 보고서를 작성한다. 1.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2. 규약 및 규정에 대하여 위반된 사항 3. 기타 필요한 사항 4. 시정을 요하는 사항 제31조[감사보고] 감사위원은 본 세칙 제17조에 의한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대회에 보고 및 7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국내출장여비 지급 규정 1. 차 마 비 : 실비 2. 숙 박 비 : 2인 1실 기준 40,000 원 3. 식 비 : 1식 5,000 원 4. 활 동 비 : 일비: 5,000 원	2010년 3월 19일 6기 1년차 정대 개정
신분보장시행 운영 세칙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4. 구류·구금 : 해당기간 동안 평균임금을 일 할 지급한다.	
출장여비지급 운영 세칙		
	제8조 국내에 출장할 때에는 국내출장여비 지급규정 의하여 교통비 실비와 활동비, 숙박료 및 식비를 지급한다.	
대내경조금 지급 세칙		
	1. 본 인 결 혼 -----5만원 2. 부모상(배우자포함) ----- 5만원 3. 부모회갑(배우자포함) ----- 3만원 4. 부모칠순(배우자포함) ----- 3만원 5. 자 녀 상 ----- 5만원 6. 자 녀 결 혼 ----- 5만원	

2012년 12월 15일 7기 1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제24조[구 성]	제24조[구 성] 감사위원회는 각 지회 감사위원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29조 [교육위원회]	제29조 [교육위원회] 3. 지회 교육위원은 지회장이 위촉한다. 항 신설	

제44조[조합비]	제44조[조합비] 1.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는 조합원임금(기본급+주휴수당)의 1.5%로 한다. 단, 김스지회의 지부일괄 공제액은 김스지회 조합원 임금(기본급+주휴수당)의 1.5%로 한다.	
출장여비지급 운영 세칙		
	제1조 지부, 지회의 간부 및 조합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본 세칙에 의한다.	
	제2조 지부, 지회의 간부 및 조합원이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출장명령에 의하여 사전 결재를 얻은 다음 출발하여야 한다.	

2026년 2월 6일 조합원 총회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제5조구 성] 1. 지부는 기업단위의 만도지부 관할 구역에 속한 <u>주)만도와 김스 코리아에</u> 고용된 노동자 중 조합에 가입한 자로서 구성된다. 단, 회사 측의 사업확장 등에 의해 법인체 분리 이전된 공장이 발생하거나 공장 분리매각이 이루어질 경우 즉시 조직대상에 포함한다. 2. 조합원의 자격은 사무직 중 과장 미만, 기능직 중 직장 미만, 별정직은 단협에 의거 저촉되지 아니한 사원으로 하며, 비정규직, 사내하청, 사내하도급업체 종사자에 한해서도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의 취득은 아래 3, 4항의 절차에 따른다. 1) 비정규직, 사내하청, 사내하도급 종사자에 한해서는 지회소속의 분회를 둔다.	제5조구 성] 1. 지부는 기업단위의 만도지부 관할 구역에 속한 <u>주)HL 만도</u> 에 고용된 노동자 중 조합에 가입한 자로서 구성된다. 단, 회사 측의 사업확장 등에 의해 법인체 분리 이전된 공장이 발생하거나 공장 분리매각이 이루어질 경우 즉시 조직대상에 포함한다. 2. 조합원의 자격은 사무직 중 과장 미만, 기능직 중 직장 미만, 별정직은 단협에 의거 저촉되지 아니한 사원으로 하며, 비정규직, 사내하청, 사내하도급업체 종사자에 한해서도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의 취득은 아래 3, 4항의 절차에 따른다. 단, 비정규직, 사내하청, 사내하도급 종사자에 한해서는 지회소속의 분회를 둔다. 2) 항 삭제 7. 김스코리아지회 삭제	

2) <u>깁스코리아 지회는 지회의 단체협약에 따른다.</u> 7. 지회단위는 다음과 같이 둔다. 단, 지회설치사유발생 시 추가설치 할 수 있다. 평택지회: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하만호길 32 문막지회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공단길 80 익산지회: 전북 익산시 석암로 17길 109(팔봉동) 깁스코리아지회: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공단길 62		
제3조[사무소] 4. 깁스코리아지회: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공단길 62	제3조[사무소] 4. 항 삭제	
제15조[대의원 배정기준] 2. 지부 대의원은 당연히 지회 대의원이 된다. 단) 깁스지회는 조합원수 150명 이하일 경우 25명당 1명을 선출한다.	제15조[대의원 배정기준] 2. 단서조항 삭제	
제18조[구 성]	제18조[구 성] 7. 각 지회 사무장 (조직 복원시까지 한시적)	
제39조[단체교섭위원 구성] 1. 단체교섭위원은 지부장이 위촉하며 <u>대의원대회의</u>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단, 금속노조의 방침이 있을 경우에는 조합의 방침에 따른다.	제39조[단체교섭위원 구성] 1. 단체교섭위원은 지부장이 위촉하며 <u>총회</u> 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단, 금속노조의 방침이 있을 경우에는 조합의 방침에 따른다.<u>(조직 복원시까지 한시적)</u>	
제43조[조합회계] 3. 일반회계2(인건비)는 무급전임자 임금지급 외 사용 할 수 없다.	제43조[조합회계] 3. 일반회계2(인건비)는 무급전임자 임금지급 외 사용 할 수 없다. 단, <u>운영위 결의로 사용할 수 있다.</u>	단서조항 삽입
제44조[조합비]	제44조[조합비]	1항 개정, 단서 조항 삭제

1.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는 조합원임금(기본급+주휴수당)의 1.5% 로 한다. 단, 갑스저화의 지부일괄공제액은 갑스저화 조합원 임금(기본급+주휴수당)의 1.5%로 한다. 2.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 중 1.5%는 필요에 따라 총회(대의원대회)의 결정에 의해 증감할 수 있다.	1.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는 조합원임금 <u>본봉의 2% 와 해당전임자 임금으로 한다.</u> 단, 갑스저화의 지부일괄공제액은 갑스저화 조합원 임금(기본급+주휴수당)의 1.5%로 한다. 2.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 중 <u>2%</u>는 필요에 따라 총회(대의원대회)의 결정에 의해 증감할 수 있다.	2항 개정
제45조[회계년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1일부터 다음해 9월30일 까지 한다.	제45조[회계년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개정
회계 운영 세칙		
제3조[회계년도] 지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1일부터 익년 9월 30일 까지로 한다.	제3조[회계년도] 지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세출의 근거] 세출은 당해 회계년도 조합비 총수입의 한도 내에서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결의를 얻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차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5조[세출의 근거] 세출은 당해 회계년도 조합비 총수입의 한도 내에서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결의를 얻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차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u>※조직복원시까지 한시적</u>	
제9조[예산편성] 1. 지부장(지회장)은 매 회계연도 소관에 속하는 수입, 지출 예산을 편성하여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제9조[예산편성] 1. 지부장(지회장)은 매 회계연도 소관에 속하는 수입, 지출예산을 편성하여 <u>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u> <u>※조직복원시까지 한시적</u>	
제12조[예비비]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의원대회의 결의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2조[예비비]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u>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u> <u>※조직복원시까지 한시적</u>	
제13조[예산의 승인] 지부장(지회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제13조[예산의 승인] 지부장(지회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관, 항, 목간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관, 항, 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없고, 예산집행 상 부득이한 항간의 전용은 대의원대회 , 목간의 전용은 운영위원회(집행위원회) 결의를 얻은 후 전용할 수 있다. <u>※조직복원시까지 한시적</u>		
제14조[추가예산의 편성] 지부 운영상 필요 불가피한 사업수행에 대한 경비의 지급으로 인하여 예산의 부족이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대의원대회 의 결의로 추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4조[추가예산의 편성] 지부 운영상 필요 불가피한 사업수행에 대한 경비의 지급으로 인하여 예산의 부족이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 의 결의로 추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u>※조직복원시까지 한시적</u>	
제15조[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예산 불성립시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 후, 대의원대회 에 추후 승인을 득한다.	제15조[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예산 불성립시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 후, 운영위원회 에 추후 승인을 득한다. <u>※조직복원시까지 한시적</u>	
제16조[적립금] 제 준비기금 및 충당금을 적립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대회 결의를 얻어 적립하여야 한다.	제16조[적립금] 제 준비기금 및 충당금을 적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의를 얻어 적립하여야 한다. <u>※조직복원시까지 한시적</u>	
제17조[결산보고] 지부장(지회장)은 회계연도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작성,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대의원대회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결산보고] 지부장(지회장)은 회계연도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작성,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조합원 총회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u>※조직복원시까지 한시적</u>	
제35조[결산보고] 지부장(지회장)은 회계년도 에 따른 특별회계 결산 보고서를 작성, 대의원대회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결산보고] 지부장(지회장)은 회계년도 에 따른 특별회계 결산 보고서를 작성, 조합원 총회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u>※조직복원시까지 한시적</u>	
국내출장여비 지급 세칙		
1. 차 마 비 : 실비 2. 숙 박 비 : 2인 1실 기준 40,000원 3. 식 비 : 1식 5,000원 4. 활 동 비 : 일비: 5,000원	1. 차 마 비 : 실비 2. 숙 박 비 : 2인 1실 기준 60,000원 3. 식 비 : 1식 11,000원 4. 활 동 비 : 일비: 10,000원	

1. 본 인 결 혼 -----5만원 2. 부모상(배우자포함) ----- 5만원 3. 부모회갑(배우자포함) ----- 3만원 4. 부모칠순(배우자포함) ---- - 3만원 5. 자 녀 상 ----- 5만원 6. 자 녀 결 혼 ----- 5만원 7. 부모상(배우자포함) --- 10 만원 상당의 조화를 지급한다.	6. 향 삭제 7. 향 신설	
---	--------------------	--

2026년 7월 1일 14기 1년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3조[사무소] 2. 문막지회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공단길 80 3. 익산지회: 전북 익산시 석암로 17길 109 (팔봉동)	제3조[사무소] 2. 원주지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공단길 80 3. 익산지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석암로 17길 109	지회 명칭 변경 및 문구 수정
제5조구 성] 7. 지회단위는 다음과 같이 둔다. 단, 지회 설치사유발생 시 추가설치 할 수 있다. 평택지회: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하만호길 32 문막지회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공단길 80 익산지회: 전북 익산시 석암로 17길 109(팔봉동)	제5조구 성] 7. 지회단위는 다음과 같이 둔다. 단, 지회 설치사유발생 시 추가설치 할 수 있다. 평택지회: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하만호길 32 원주지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공단길 80 익산지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석암로 17길 109	지회 명칭 변경 및 문구 수정
제15조[대의원 배정기준] 대의원 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부 대의원 배정은 조합원 50명당 1명을 선출하되 단수26명 이상은 1명을 배정한다.	제15조[대의원 배정기준] 대의원 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부 대의원 배정은 조합원 40명당 1명을 선출하되 단수21명 이상은 1명을 배정한다.	문구 개정 ※문구수정 50명→40명 26명→21명 *취지: 대

		의원 활동 역량 강화
	제16조[대의원 소환] 지부 대의원의 소환은 해당 선출 단위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지부장은 발의접수 후 10일 이내에 해당 선출 단위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된다. [본조신설 2007.10.18.]	조 신설 *금속노조 모범 지부 규정에서 누락
제17조[구 성]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7. 각 지회 사무장(조직 복원시까지 한시적)	제18조[구 성]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7.(항 삭제)	7항 삭제 *제18조로 순연
제29조[임 원] 지부에는 다음 임원을 둔다. 4. 지회장 5. 감사위원회	제30조[임 원] 지부에는 다음 임원을 둔다. 4. (항 삭제) 4. 감사위원회	4항 삭제 항 변경 5항→4항 *제30조로 순연
제30조[임 무] 지부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4. 지회장 : 지부장, 수석부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유고 시 지부장의 위촉에 의하여 지부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5. 감사위원 : 감사위원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31조[임 무] 지부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4. (항 삭제) 4. 감사위원 : 감사위원의 기능을 수행한다.	4항 삭제 항 변경 5항→4항 *제31조로 순연 *지부, 지회 임원 구분 필요.
제38조[단체교섭위원 구성] 1. 단체교섭위원은 지부장이 위촉하며 총회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단, 금속노조의 방침이 있을 경우에는 조합의 방침에 따른다. (조직 복원시까지 한시적) (2026년 2월 6일 개정)	제39조[단체교섭위원 구성] 1. 단체교섭위원은 지부장이 위촉하며 대의원대회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단, 금속노조의 방침이 있을 경우에는 조합의 방침에 따른다.	조직 복원 시까지 한 시적 문구 삭제 *총회 → 대의원대회 *제39조로 순연
제42조[조합회계] 1. 조합비 회계는 일반회계(운영비), 일반회	제43조[조합회계] 1. 조합비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일반회계 1 일반회계 2

<u>제2(인건비)와 특별회계로 구분 관리한다.</u>(2010년09월15일 임대개정 사항) 2. <u>일반회계1,2</u>는 조합비로 구성하며, 특별회계는 기부금. 기금 또는 특별 부과금으로 구성한다. (2010년09월15일 임대개정 사항) 3. <u>일반회계2(인건비)는 무급전임자 임금지급 외 사용 할 수 없다.</u>(2010년09월15일 임대신설 사항) 단, 운영위 결의로 사용할 수 있다. (2026년 2월 6일 단서조항 삽입)	구분 관리한다. 2. <u>일반회계</u>는 조합비로 구성하며, 특별회계는 기부금. 기금 또는 특별 부과금으로 구성한다. (2010년09월15일 임대개정 사항) 3. <u>항 삭제</u>	삭제 후, 일반회계로 개정 3항 삭제 *제43조로 순연
제43조[조합비] 1.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는 조합원임금 <u>본봉의 2%와 해당전임자 임금으로 한다.</u>	제44조[조합비] 1.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는 조합원임금 <u>약정통상임금 1%로 한다.</u>	금속노조 조합비 규정 삽입 자동 갱신 * 제 44 조 로 순연
제44조[<u>회계년도</u>]	제45조[<u>회계연도</u>]	문구수정 * 제 45 조 로 순연
제46조[결 산] <u>회계년도</u> 종료 후 결산은 총회(대의원대회)에 보고한 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7조[결 산] <u>회계연도</u> 종료 후 결산은 총회(대의원대회)에 보고한 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문구수정 * 제 47 조 로 순연
제60조[<u>회계년도</u>]	제61조[<u>회계연도</u>]	문구수정 * 제 61 조 로 순연

선거관리 운영세칙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대의원선거 선거구] 1. 선거구당 대의원 수는 조합원 <u>50명당</u> 1명을 선출하되, 단수 <u>26명</u> 이상은 1명을 배정한다. 2. 지부 대의원은 당연히 지회 대의원이 된다. <u>※조직복원시까지 일시중단</u>	제4조[대의원선거 선거구] 1. 선거구당 대의원 수는 조합원 <u>40명당</u> 1명을 선출하되, 단수 <u>21명</u> 이상은 1명을 배정한다. 2. 지부 대의원은 당연히 지회 대의원이 된다.	<u>※조직복원 시까지 일시중단</u> <u>문구 삭제</u> <u>※문구수정</u> 50명→40명 26명→21명 *취지: 대의원 활동 역량 강화
제16조[투 표]	제16조[투 표]	5항 단서

5. 부재자 투표의 경우 부재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5. 부재자 투표의 경우 부재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u>단, 출장자 및 상주원, 파견근무자(국내외)에 한하며, 현장 투표와 온라인(ARS, 모바일) 투표를 병행할 수 있다. 투표 안내의 발신, 투표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u>	조항 신설 *취지 : 출장자, 상주원, 파견근무자 선거권 보장
---	---	--

회계 운영세칙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u>회계년도</u>]	제3조[<u>회계연도</u>]	문구수정 <u>※조직복원 시까지</u> <u>한시적 문구삭제</u>
제5조[세출의 근거] 세출은 당해 <u>회계년도</u> 조합비 총수입의 한도 내에서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u>운영위원회</u> 결의를 얻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차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2026년 2월 6일 개정) <u>※조직복원시까지 한시적</u>	제5조[세출의 근거] 세출은 당해 <u>회계연도</u> 조합비 총수입의 한도 내에서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u>대의원대회</u> 의 결의를 얻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차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 회 계 년 도 → 연도 * 운영위원 회 → 대의 원대회
제7조[회계구분] 1. 회계는 <u>일반회계1.2</u> 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010년09월15일 임대개정 사항)	제7조[회계구분] 1. 회계는 <u>일반회계</u> 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문구 수정
제8조[세출기한과 <u>회계년도</u> 구분] 1. 당해 <u>회계년도</u> 에 속하는 세입, 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u>회계년도</u> 마감 익월 말일 내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제8조[세출기한과 <u>회계연도</u> 구분] 1. 당해 <u>회계연도</u> 에 속하는 세입, 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u>회계연도</u> 마감 익월 말일 내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문구수정
제9조[예산편성] 1. 지부장(지회장)은 매 회계연도 소관에 속하는 수입, 지출예산을 편성하여 <u>조합원 총회</u> 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2026년 2월 6일 개정) <u>※조직복원시까지 한시적</u>	제9조[예산편성] 1. 지부장(지회장)은 매 회계연도 소관에 속하는 수입, 지출예산을 편성하여 <u>대의원대회</u> 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u>※조직복원 시까지</u> <u>한시적</u> <u>문구 삭제</u> *조합원 총 회 → 대의 원대회
제12조[예비비]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u>운영위원회</u>	제12조[예비비]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u>대의원대회</u>	<u>※조직복원 시까지</u> <u>한시적</u>

의 결의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2026년 2월 6일 개정) ※조직복원시까지 한시적	의 결의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문구 삭제 *운영위원회 → 대의원대회
제13조[예산의 승인] 지부장(지회장)은 세출 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관, 항, 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없고, 예산집행 상 부득이한 항간의 전용은 운영위원회, 목간의 전용은 운영위원회(집행위원회) 결의를 얻은 후 전용할 수 있다. (2026년 2월 6일 개정) ※조직복원시까지 한시적	제13조[예산의 승인] 지부장(지회장)은 세출 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관, 항, 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없고, 예산집행 상 부득이한 항간의 전용은 대의원대회, 목간의 전용은 운영위원회(집행위원회) 결의를 얻은 후 전용할 수 있다.	※조직복원시까지 한시적 문구 삭제 *운영위원회 → 대의원대회
제14조[추가예산의 편성] 지부 운영상 필요 불가피한 사업수행에 대한 경비의 지급으로 인하여 예산의 부족이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추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2026년 2월 6일 개정) ※조직복원시까지 한시적	제14조[추가예산의 편성] 지부 운영상 필요 불가피한 사업수행에 대한 경비의 지급으로 인하여 예산의 부족이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대의원대회의 결의로 추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조직복원시까지 한시적 문구 삭제 *운영위원회 → 대의원대회
제15조[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예산 불성립시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 후, 운영위원회에 추후 승인을 득한다. (2026년 2월 6일 개정) ※조직복원시까지 한시적	제15조[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예산 불성립시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 후, 대의원대회에 추후 승인을 득한다.	※조직복원시까지 한시적 문구 삭제 *운영위원회 → 대의원대회
제17조[결산보고] 지부장(지회장)은 회계연도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작성,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10년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사항) (2026년 2월 6일 개정) ※조직복원시까지 한시적	제17조[결산보고] 지부장(지회장)은 회계연도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작성,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직복원시까지 한시적 문구 삭제 *조합원 총회 → 대의원대회

제28조[감사종류] 감사위원은 다음 각 항을 감사한다. (2010년 정기대의원대회 개정사항) 1. <u>일반회계</u> 1,2 및 특별회계의 집행사항 및 결산에 관한 사항(2010년09월15일 임대개정 사항)	제28조[감사종류] 감사위원은 다음 각 항을 감사한다. (2010년 정기대의원대회 개정사항) 1. <u>일반회계</u> 및 특별회계의 집행사항 및 결산에 관한 사항(2010년09월15일 임대개정 사항)	일반회계 1,2 일반회계로 개정
제35조[결산보고] 지부장(지회장)은 <u>회계연도</u> 에 따른 특별회계 결산 보고서를 작성, <u>조합원 총회</u>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26년 2월 6일 개정) ※조직복원시까지 한시적	제35조[결산보고] 지부장(지회장)은 <u>회계연도</u> 에 따른 특별회계 결산 보고서를 작성, <u>대의원대회</u>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직복원시까지 한시적 문구 삭제 문구수정 *조합원 총회 → 대의원대회

대내경조금 지급규정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u>1~6. (2026년 2월 6일 항 삭제)</u> 7. 부모상(배우자포함) --- 10만원 상당의 조화를 지급한다. (2026년 2월 6일 항 신설) 항변경 8. 본인 상 및 배우자 상 ----- 10만원 상당의 조화와 조합원 1인당 <u>10,000원</u>씩 일괄 공제 하여 지급한다. <u>단) 휴직 및 사직(질병으로 인한)자가 사망원인이 직업병으로 판단 받은 경우(12개월 이내) 대내외경조금 지급규정 제7항을 적용한다.</u> (2004년 정대 개정사항) (2026년 2월 6일 항 변경) ※대내경조금 지급규정은 조직복원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1. 본인 결혼 ----- 5만원 2. 부모상(배우자포함) ----- 5만원 3. 부모회갑(배우자포함) ----- 5만원 4. 부모칠순(배우자포함) ----- 5만원 5. 자녀 상 ----- 5만원 6. 자녀 결혼 ----- 5만원 8. 본인 상 및 배우자 상 - 10만원 상당의 조화와 조합원 1인당 <u>15,000원</u>씩 일괄공제 하여 지급한다. <u>단) 퇴직 후 12개월 이내 사망원인이 직업병으로 판단 받은 경우 대내경조금 지급 세칙 8항을 적용한다.</u> (2004년 정대 개정사항) (2026년 2월 6일 항 변경)	※대내경조금 지급규정은 조직복원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문구 수정 ※취지: 휴직, 사직 해석이 어려움 1항 ~ 6항 복원 3항과 4항, 8항 자동 갱신

만도 지부 규정, 규칙, 세칙 명칭 개정

차 례	차 례	
■ 지부규정 지부 운영 <u>규칙</u> ■ 지회 규칙(모범) 지회 운영 규칙 ■ 각종 세칙 신분보장시행 운영세칙 선거관리 운영세칙 회계 운영세칙 출장여비지급 운영세칙 국내출장여비 <u>지급규정</u> 대내경조금 <u>지급규정</u>	■ 지부규정 지부 운영 <u>규정</u> ■ 지회 규칙(모범) 지회 운영 규칙 ■ 각종 세칙 신분보장시행 운영 세칙 선거관리 운영 세칙 회계 운영 세칙 출장여비지급 운영 세칙 국내출장여비 지급 <u>세칙</u> 대내경조금 지급 <u>세칙</u>	문구수정 규칙→규정 규정→세칙 *취지: 규정, 규칙, 세칙 순으로 정렬 함.